

#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연구결과의 공개시점을 연구용역 종료 후 '지체없이'로 명시하고,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학술용역의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 '지체없이'로 명문화(안 제4조제1항)
- 나.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(안 제5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2. 6. 9.~2022. 6. 29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    호

##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”를 “종료된 후 지체없이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② 집행기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 ① ----- ----- 종료 된 후 지체없이 ----- -----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집행기관의 정책·시책·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</p>	<p>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행기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.</p>
<p>③ 제2항에 따른 공개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
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조례의 내용을 상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통일하는 것으로,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이 없음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 김대식(02-2133-7827)